



제35회 국회(임시회)제4차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식재산교육” 규정 신설 〉

■ 양금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654호)

2022. 4.

교 육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재 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양금희 · 권은희 · 김상훈 · 김형동 · 서병수 · 서일준
윤창현 · 이채익 · 임이자 · 전봉민 · 조명희 · 지성호
태영호 · 이 영 의원(14인)

2. 발의연월일 : 2022. 2. 4.

3. 회부연월일 : 2022. 2.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재산권의 창출이 국가 산업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로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지식재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양성 교육체제 마련이 시급한 과제임.

학생의 창의력, 인성 및 융합적 사고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발명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교육이 국가 교육과정체계에서 연계성을 갖고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창의력 및 융합적 사고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지식재산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4차 산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지식재산”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2조의3(학교체육) (생략)	제22조의3(지식재산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창의력 및 융합적 사고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지식재산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4(학교체육) (현행 제22조의3과 같음)

“지식재산”이란 현행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1)에 따르면,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같은 법 제3조제3호2)는 “지식재산권”을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음.

1)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³⁾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지식재산교육”은 이러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창출된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화하고, 활용하기 위해 사업화하는 과정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음⁴⁾.

< 지식재산권의 분류 >

구분	내용	세부구분	예시	규율 법률
산업 재산권	산업영역에서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 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특허권	전기차 모터 등 ‘핵심기술’	특허법
		실용신안권	전기차 주변 ‘개량기술’	실용신안법
		상표권	전기차 ‘모델명’	상표법
		디자인권	전기차 ‘외관’	디자인보호법
저작권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	저작인격권	음악의 ‘작곡자의 성명표시’	저작권법
		저작재산권	음악의 ‘공연, 방송, 배포’	
		저작인접권	음악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갖는 권리	
신지식 재산권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도메인 주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반도체 직접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종자산업법 등
		전통지식	‘과학지식’, ‘생태학적 지식’	
		유전자원	‘신품종’, ‘농림자원’	

자료 : 「제3차 국가지식 기본계획(안)」 (2022~2026),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1. 12

3)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신지식재산**”이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을 말한다.

4) “국가 지식재산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2, p.19

「대한민국헌법」 제22조제2항⁵⁾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⁶⁾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 중 하나인 「저작권법」 제2조의2⁷⁾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⁸⁾으로 제정(2011. 5.19.)된 「지식재산 기본법」(2011. 7. 20. 시행) 제33조⁹⁾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에 대한 창출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기

5) 「대한민국헌법」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6) 실용신안법 제34조 등 위헌확인(2002. 4. 25, 2001헌마200)

“헌법 제22조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하여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내포된 문화국가실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저작자 등의 권리 보호를 국가의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학문과 예술을 발전·진흥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결할 뿐 아니라, 이들 저작자 등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7) 「저작권법」 제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지식재산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9) 「지식재산 기본법」 제33조(지식재산 교육 강화)

① 정부는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지식재산에 특성화된 학교를 육성하고, 지식재산 관련 학과나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하여 초·중등학교와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평생교육기관¹⁰⁾의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사항¹¹⁾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지식재산의 창출과 관련하여서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7. 3. 14.)을 통해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및 대학에 이르기까지 각급학교에서의 학생 발명 교육을 활성화¹²⁾하

10)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11) 「지식재산 기본법」 제3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①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여성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이 지식재산 부문에서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문화예술계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이나 사업자 등에 대하여 교육설비, 교재개발, 교육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2)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발명교육**”이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개발하고 발명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키며 발명을 생활화 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발명교육에 특화된 학교** 및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2. **발명교육의 교육과정과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3. **발명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지원**
 4.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대한 지원
 5. 발명교육 관련 동아리활동·전시회·발표회 등 발명교육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발명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고 산업재산권 전문인력의 양성¹³⁾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관련 법률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과 함께, 지식재산의 창출, 권리화, 보호 및 활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군의 진로선택과목으로 ‘지식재산 일반’ 과목이 신설된 바 있으며,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에 “발명교육센터”¹⁴⁾가 설치·운영되어 지식재산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저작권 인식 취약 계층에게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¹⁵⁾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생의 창의력, 인성 및 융합적 사고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발명¹⁶⁾ 등 지

13)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지원하고,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 및 강좌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14)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등의 발명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의 설치·관리, 지도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연간 6,000회 이상 운영

16) 국민의 발명활동을 장려하고 교육현장에서 발명교육이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발명교육에 대한 국가 등의 의무를 부여하려는 내용의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대표발의, 2021. 5.18, 의안번호 제10210호)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식재산과 관련된 교육이 국가 교육과정체계에서 연계성을 갖고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¹⁷⁾의 현황 진단¹⁸⁾에 따르면, 역량 있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식재산 교육의 수혜 비율이 연간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의 6.2%(2019년 기준 34.4만명) 수준에 불과하고, 산업수요를 반영한 지식재산 실무인력 및 국제표준 전문가 육성 또한 부족한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지식재산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관련 내용을 「교육기본법」에 명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이러한 입법 취지의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및 산업의 비대면화 확산에 따라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급격하게 증가¹⁹⁾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와

17)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제9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4. 이 법에 따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

18) 「제3차 국가지식 기본계획(안)」(2022~2026),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1.12, p.14

19) 전 세계 지식재산권 사용료 시장은 약 490조원(2020, 세계은행) 규모로 반도체 산업 시장규모 약 520조원(세계반도체 시장 통계)과 유사함.

* 자료 : 「제3차 국가지식 기본계획(안)」(2022~2026),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1. 12

아울러 앞에서 살펴본 지식재산 교육과 관련된 현행 법률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에 지식재산교육과 관련된 규정의 신설 필요성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교육기본법」에 헌법교육, 정치교육, 장애인에 대한 평등교육 증진, 노동인권교육, 생명존중의식 함양 및 금융교육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각각 우리 교육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특정 교육 시책 수립 관련 「교육기본법」 개정안 계류 현황 >

대표 발의	정춘숙 의원	이은주 의원	이해식 의원	최혜영 의원	전용기 의원	안민석 의원	이탄희 의원	조경태 의원	박완주 의원
의안 번호	1522	3271	4207	12952	10882	10892	13037	13101	13475
교육 내용	헌법 교육	정치 교육	장애인에 대한 평등교육 증진		노동인권교육			생명존중 의식 함양	금융 교육

문 의 처

02)6788-5192